

◆ 미 수은, 지원한도 증액 등을 포함한 미 수은법 개정·발효

미국 경제가 금년 1/4분기 중 5.0%(잠정치), 2/4분기 중 1.1%(추정치)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조기 회복 여부가 최근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들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셰이프가드 조치 발동 및 농가 보조금 지급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공적수출신용 확대를 통한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미 수은법 개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금번 개정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반영하여 미국 수출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 수은 업무시한 연장 및 지원한도 증액

미 수은은 1934년 2월 설립 이후 일정한 주기로 업무시한이 연장되어 온 이른바 sunset agency로, 최근에는 1997년에 업무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금번 미 수은법개정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미 수은의 업무시한 연장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WTO 체제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인 공적수출금융 지원을 자진해서 포기하게 되어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게 된다는 현실이 고려되어, 미 수은 업무시한 연장안은 상·하원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 750억 달러로 되어 있는 연간 총 지원한도(여신잔액 기준)를 매년 50억 달러씩 증액하여 2006회계연도에는 1,00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공적수출신용기관간 경쟁에서 미 수은이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Tied Aid와 관련한 미 수은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강화

미 수은은 타이드 원조(Tied Aid) 제공 시 재무장관의 권고(recommendation)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무부가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권 및 개별 거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금번 법개정시 동 내용을 삭제하여 미 수은이 실질적인 최종 승인권을 갖도록 하였다.

미 수은의 재원은 2001년 9월말 현재 재무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납입자본금 10억 달러, 특별수출신용기금[Tied Aid Appropriation] 4억 달러, 신용출연기금[Credit Appropriation] 1.9억 달러)과 재무부로부터의 차입금(70.4억 달러)으로

〈표 1〉 최근 미 수은의 Tied Aid 승인실적

구 분	1998	1999	2000	2001
Tied Aid	16.6	54.6	0.0	n.a.
총 대출승인	102.6	902.7	932.6	871.2
총 지원실적(보증, 보험포함)	10,549.6	13,067.6	12,637.1	9,241.5

단위 : 백만 달러, %

주 : 2001회계연도 승인실적은 Tied Aid를 따로 분리하여 집계하지 않았음.

구성되어 있다. 이중 특별수출신용기금은 미 수은의 타이드 원조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나, 보증 및 보험에 주력하는 미 수은의 업무 특성상 타이드 원조의 승인은 그간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한편, 미 수은은 일본 JBIC를 포함한 다수의 ECA들이 타이드 원조를 활용하여 자국의 수출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다. 금번 법개정을 통해 미 수은은 그 동안 타 ECA의 타이드 원조에 대해 취해왔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6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타이드 원조기금 운용원칙, 절차, 기준을 제정하고, 여타 ECA들이 타이드 원조는 물론 언타이드 원조를 통해서 미국 수출자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할 경우에도 타이드 원조를 적극 활용하여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 3. Market Window 등에 대한 능동적 대처

최근 캐나다 EDC, 독일 KfW 등 일부 ECA를 중심으로 공적수출신용 이외에 상

업조건 수출신용(market window)<sup>1)</sup> 지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간 EDC와 KfW 등은 공적·상업 신용의 구분 없이 수출자의 모든 거래를 ECA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반면, 미 수은은 market window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ECA는 상업은행들의 활동을 보완하는 비상업적 최종 대출/보증지원기관(non-commercial lender/guarantor of last resort)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다소 보수적인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금번 법개정을 통해 미 수은도 필요시 OECD 수출신용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의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향후 market window와 같은 상업조건 수출신용에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다만, 그 사용목적은 타 ECA의 market window에 대한 대응으로만 제한하고, 이 경우도 외국의 ECA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또한, 외국의 market window 제도가 미국 수출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경우, 동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1) 상업조건 수출금융(market window)은 ECA들이 국내의 자본시장에서 자체신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OECD 가이드라인상의 용자조건을 따르지 않고 상업적 조건으로 공여하는 수출금융임. 그러나, market window 운용은 현재까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market window의 정의에 대한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는 향후 논의과제로 남겨진 상태임.

〈표 2〉 주요 ECA의 중소기업 지원비중 (2001회계연도 기준)

단위 : %				
KfW	미 수은	EDC	한국수출입은행	JBIC
18.1	17.9	17.4	18.1	1.7

과 아울러 현재까지 OECD 가이드라인상의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 있는 market window 관련 사항에 대한 다자간 규약(Discipline)제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상을 향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4. 중소기업 지원목표 상향 조정 (총 신규승인액 중 10%→20%)

미 수은은 자체 분석을 통해 전체 승인액 중 약 90%가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2001회계연도 총 승인액 중 중소기업앞 직접 지원비중(보증, 보험 포함)이 17.9%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엔론, 보잉, GE, 웨스팅하우스 등 대기업에 미 수은의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주요 고객 기업의 하나였던 엔론이 지난 해 파산하고, 최근에는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미국내 거대기업의 회계 부정 및 부당 내부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신규 총 승인액 기준)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여성 및 유색인종)이 경영하는 중소기업과 종업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특히 주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 5. 무역분쟁중인 국가 및 업체에 대한 신중 지원

〈표 3〉 미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추이 (승인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FY 1997	FY1998	FY 1999	FY 2000	FY 2001
총승인액(A)	12,159 (2,348)	10,550 (2,192)	13,068 (2,223)	12,637 (2,529)	9,241 (2,358)
중소기업 지원액(B)	1,777 (1,935)	2,229 (1,864)	2,126 (1,918)	2,333 (2,176)	1,658 (2,124)
수출보험	1,060 (1,557)	1,659 (1,534)	1,192 (1,531)	1,513 (1,762)	902 (1,723)
운전자본보증	367 (301)	369 (265)	383 (312)	517 (339)	518 (337)
채무보증	306 (73)	192 (63)	514 (71)	296 (73)	225 (60)
직접대출	44 (4)	9 (2)	37 (4)	7 (2)	13 (4)
비중(B/A, %)	14.6	21.1	16.3	18.5	17.9

주: 1) ( )은 건수  
2)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일~당해연도 9월 30일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자국산업 보호 등의 목적을 내세워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 보조금 지급과 주요 철강수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격 실시하여 국제적인 논란과 무역분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중국 등 신흥 철강생산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수은이 최근까지 중국에 대한 철강제품 제조설비 수출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회 및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금번 법개정시 무역분쟁중인 산업에 대한 신중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였는데, 미 관세법<sup>2)</sup> 및 무역법<sup>3)</sup>상의 반덤핑/상계관세규정 및 기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국가나 업체에 대해서 미 수은은 향후 신중한 지원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무역분쟁이 진행중인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한 기 지원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상·하원에 이를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 6. 기 타

미 수은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수출보험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다양한 e-commerce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불과하지만 향후 잠재력이 풍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에이즈 치료제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항공기, 자동차, 통신 시장을 선점하려는 장기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래당사자에게 부정 또는 부패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증거(substantial credible evidence)가 있는 경우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테러지원국 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명시하였다.

【金基相】

2)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무역법이며 보호주의적 색채가 짙은 법령으로서 반덤핑규정과 상계관세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3)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 : 1970년대 중반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제정되었으며,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조항이 신설되었음. 대통령에게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권한과 아울러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301조' 규정도 신설되었음.